

2 신규채용

가. 신규

1) 관련 규정

가) 교사의 신규채용 등(「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나) 교사의 신규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2)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결원의 적기보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임용후보자 채용순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1)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마)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1)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3조)

신규임용자는 임용후보자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근무지를 지정할 때는 생활근거지를 참고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신규임용후보자를 우선 고려한다.

사) 임용시기(「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1)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